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 제안이유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어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규정 삭제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안 제6조)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안 제25조제1항)

▢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9조(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충청남도 세정13400-2077(2002.12.5)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준안에 의거 불필요한 단서규정의 삭제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확대 및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연장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 자동차세 감면분 추징규정이 종전대로 존치 되고 있어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일치시킴으로서 세정업무에 능률성이 제고 될 것이며,

○ 무료노인 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확대함으로 인하여 납세자간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함으로서 수도권지역의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